

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2591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9월 8일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장이 개방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전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함 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‘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’를 ‘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’로 수정함(안 제3조제3항)

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 중 “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”를 “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<u>범죄예방을 위한 조치</u>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</p> <p>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</p> <p>·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범죄예방을 위한 조치”를 “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<u>범죄예방을 위한 조치</u>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<u>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</u> ----- -----.</p>